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30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한도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박민규 의원안)	2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3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7.
- (3) 회 부 일 : 2025. 1.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한도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박민규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3조제1항)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u><신 설></u>	☐ 상장주식 평가방식 특례 신설 ☐ 상장주식 - (현행과 같음) - <u>상장주식을 평가한 1주당 가액이 해당 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u>

* 박민규의원안 2025. 1. 7. 발의(의안번호 7309)

- ☐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통상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됨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순의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순의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도록 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권거래소에서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로 평가하고 있음²⁾.

그런데 상속 혹은 증여를 앞둔 기업의 지배주주는 세부담을 덜고자 자사 주식가격이 평가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유인이 발생하고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주주와 이해관계 상충문제가 발생하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³⁾.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의
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오너 2·3세 경영 승계 과정...주가 따라 세금부담, bizwatch, 2024. 4. 25.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4/04/22/0017>

□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고자 한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순자산가치가 시가보다 낮은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조치가 지배주주의 주가억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지배주주는 절세 계획의 일환으로 증여 전에 회계상 이익조정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평가가액을 낮출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낮은 순자산가치가 평가가액이 되므로 지배주주의 주가 억제 유인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임.

둘째, 주가는 외부환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사의 실체가치보다 급등할 수 있고, 이러한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질 수 있는데 개정안의 순자산가치 한도는 이를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시가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로서, 비록 외부환경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는 미래의 영업이익 등 기대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고의로 조작된 경우가 아닌 한 시가가 순자산가치보다 평가가액으로서 적정한 것일 수 있음.

순자산가치는 미래의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업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지 않음.

둘째, 과세가액을 낮추기 위해 상속 혹은 증여를 앞둔 사람들이 순자산가치가 시가보다 낮은 기업을 매수하여 절세하는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가령, 증여 시점 2개월 전 순자산가치가 시가에 비해 낮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증여한 다음 수증자가 높은 시가에 매도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이 경우 수증자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⁴⁾.

셋째, 주가하락 유인을 방지하고자 개정안과 같이 순자산가치를 주식 평가가액의 상한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지배주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나 자산의 일시적 매각 등을 통해 순자산가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문 의 처

02)6788-5161

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